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220453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2.05.25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1.09.

포시즌키친

정 보 공 개 서

(주)별빛과선인장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별빛과선인장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치동천로3길 6-9, 101호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31-374-4378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6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4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5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5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52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54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58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60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별빛과 선인장	포시즌키친	경기도 화성시 동탄치동천로3길 6-9, 101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22.12.01	2022.12.01	김태진	031-374-4378	
	법인등록번호	134811-0719007	사업자등록번호	341-86-0286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김태진/박예찬/ 문미숙/김기호	포시즌키친	경기도 화성시 동탄치동천로3길 6-9, 101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태진	031-374-437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포시즌키친	포시즌키친	2022.12.10	경기도 화성시 동탄치동천로3길 12, 주건축물제1동 1층 전부호	김태진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포시즌키친’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포시즌키친	
상 호	포시즌키친 00점	
상표(서비스표)		상표 출원번호 : 4020220158375 상표 등록번호 : 4019616340000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2022년	1,609	8,130	-6,521	0	-7,520	-7,520
2023년	1,143,315	1,502,551	-359,236	2,450,053	-315,557	-317,557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태진	대표이사	2018.12 ~ 현재	포시즌키친 개인사업자	회사 업무 총괄
			2022.12 ~ 현재	(주)별빛과선인장 대표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박예찬	사내이사	2022.12 ~ 현재	(주)별빛과선인장 이사	경영 지원
	문미숙	사내이사	2022.12 ~ 현재	(주)별빛과선인장 이사	경영 지원
	김기호	감사	2022.12 ~ 현재	(주)별빛과선인장 감사	회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1	3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특수관계인 (배우자)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43류	2022.08.26. 출원 2023.01.13. 등록	출원 4020220158375 등록 4019616340000	김태진	2023.01.13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가맹본부의 포시즌키친 가맹사업 현황

1. 포시즌키친을 시작한 날 : 2022년 8월 25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 2023년 2월 16일)

2. 포시즌키친 연혁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포시즌키친	포시즌키친	김태진	2022.08.25. ~ 2022.12.09.	경기도 화성시 동탄치동천로3길 12, 주건출물제1동 1층 전부호
(주)별빛과선인장	포시즌키친	김태진	2022.12.10. ~ 현재	경기도 화성시 동탄치동천로3길 6-9, 101호

3. 포시즌키친 업종

영업표지	업 종	
포시즌키친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서양식	파스타, 피자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포시즌키친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	3		7	5	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	2		6	4	2
강원									
충북									
충남				1	1		1	1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바로 전 3년간 포시즌키친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0	0	0	0	0	0
2022	0	3	0	0	0	3
2023	3	2	0	0	0	5

6. 포시즌키친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특수관계인 (배우자)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포시즌키친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5	572,975	17,508	674,691	19,469	460,170	15,339	3곳 산정
서울		해당 없음						
부산		해당 없음						
대구		해당 없음						
인천		해당 없음						
광주		해당 없음						
대전		해당 없음						
울산		해당 없음						
세종		해당 없음						
경기	4	해당 없음						5곳 미만
강원		해당 없음						
충북		해당 없음						
충남	1	해당 없음						5곳 미만
전북		해당 없음						
전남		해당 없음						
경북		해당 없음						
경남		해당 없음						
제주		해당 없음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 수치로 포함하였으나, 2023년 7월 이후 영업을 개시한 1개 가맹점(평택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

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축점은 전년도에 영업하지 않았으므로, 연간 평균 매출액산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5개가 아닌 실제 3개 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량, 시장 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8. 포시즌키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포시즌키친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5	363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포시즌키친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에서 2023년에 포시즌키친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8,661		(비공개)	
광고		(비공개)	18,661		(비공개)	
판촉			0	0	0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동탄역금융센터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537	031-8031-256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일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신한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에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포시즌키친’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를 시행하고 있어, 별도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장범위		
지급조건		
보험금의 수령절차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포시즌키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4,300				
가입비	5,500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 의무가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해지된 경우	반환 시에 당사에서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8,800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을 시작한 이후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에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3,000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7,300
가입비	5,500
교육비	8,800
계약이행보증금 (부가가치세 없음)	3,000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예치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한다.

- 4) 귀하가 그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 : 40평,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47,400 ~ 239,800				
인테리어 (점포 내장 공사)	가맹본부	88,000 ~ 110,000	2,200 ~ 2,750	가맹점 오픈 후 2주 이내	공사전 계약취소	
간판	가맹본부	11,000 ~ 22,000		간판 공사 1주일 전	공사전 계약취소	
집기	가맹본부	33,000 ~ 82,000		집기 공급 1일 이전	집기 미공급시	
장식품	가맹본부	8,800 ~ 16,500		장식품 공급 1일 이전	장식품 미공급시	
최초 공급 원/부재료 등	가맹본부	3,300 ~ 5,500		원/부재료 등 공급 1일 이전	원/부재료 등 미공급시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가맹본부	3,300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	개점 전 계약취소 (그간 소요 비용 제외)	오픈홍보비 등 대행 대가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테리어 공사 관련, 당사의 설계 및 감리 대가로 132㎡ 기준으로 4,000,000원을 내부 인테리어 공사 1주일 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점 점포에 대한 계약과 기타 건물주와의 계약 등을 결정하여 체결합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포시즌키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합니다. 가맹본부는 이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원할 경우에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파산,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가 개시된 자가 아닐 것, 건강진단서결과(보건증) 취득 가능자이며, 만 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건강진단서결과(보건증) 취득 가능자이며,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포시즌키친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	잔금
금액(천원)						
납부일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을 49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영업표지 사용료 (로열티)	가맹본부	매출액의 3%	매월 10일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전국 단위 : 가맹본부 100% 분담 가맹점 단위 : 가맹점 100% 분담	다음 달 20일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행사별로 50% 분담	다음 달 20일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지급	교육 실시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교육 취소	교육 실시 이후	교육 필요시 지급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가맹본부	교체 실비	간판 발주 이전		간판 발주 이후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 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서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POS 사용료	협력업체	월 30	다음 달 5일			별도 협의
태블릿 메뉴판		1대당 22	다음 달 5일			별도 협의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제 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수시	문의: (031-374-4378)
위생관리	육부, 주방, 창고, 화장실 등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청결 상태를 확인	수시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수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추가 교육비	협약하여 결정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 실시 후에 반환 불가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협약하여 부담	점포 이전 후 10일 이내		점포 이전 후에 반환 불가	점포이전 합의시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에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만약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포시즌키친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포시즌키친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행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45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매장, 전화번호부, 온라인 등 영업 관련 장소에서 가맹본부의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매뉴얼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위 사항의 조치가 완료됨을 확인하는 즉시 계약이행보증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채무, 손해배상금 등 담보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위 사항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한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에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포시즌키친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포시즌키친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
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포시즌키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2) 당사가 포시즌키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라구로제라자나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 경고 2회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 계약 해지	
크림브뤼레 프렌치토스트			
명란오일 쉬림프파스타			
관자 들깨크림 뇨끼			
루꼴라 마르게리따			
덴버컷 스테이크			
클램차우더			
포시즌런치세트(2인)			
하몽 프렌치토스트			
철판통삼겹바베큐&볶음밥			
포시즌디너스테이크세트(2인)			
포시즌디너패밀리세트(4인)			
잠봉에그베네딕트			
베이컨 에그베네딕트			
부라타치즈 샐러드			
리코타치즈샐러드			
치킨텐더샐러드			
트리플 크림 뇨끼			
바질크림 뇨끼			
캐비어관자 바질크림 리조또			
통베이컨 투움바리조또			
쉬림프로제파케리			
화이트라구파케리			
빠네			
부라타치즈 바질			
잠봉루꼴라			

고르곤졸라 포테이토			
트리플오일풍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고등학교 재학생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라구로제라자나	18,900	서면 또는 POS로 공지	메뉴 가격은 시장 상황과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음.
크림브뤼레 프렌치토스트	15,300		
명란오일 쉬림프파스타	20,500		
관자 들깨크림 뇨끼	26,000		
루꼴라 마르게리따	23,500		
덴버컷 스테이크	49,800		
클램차우더	17,800		
포시즌런치세트(2인)	59,800		
하몽 프렌치토스트	16,800		
철판통삼겹바베큐&볶음밥	29,800		
포시즌디너스테이크세트(2인)	86,000		
포시즌디너패밀리세트(4인)	142,000		
잠봉에그베네딕트	21,000		
베이컨 에그베네딕트	19,800		
부라타치즈 샐러드	19,500		
리코타치즈샐러드	18,500		
치킨텐더샐러드	17,800		
트리플 크림 뇨끼	25,500		
바질크림 뇨끼	23,000		
캐비어관자 바질크림 리조또	25,500		
통베이컨 투움바리조또	22,000		
쉬림프로제파케리	20,500		
화이트라구파케리	20,500		
빠네	20,500		
부라타치즈 바질	24,500		
잠봉루꼴라	25,000		
고르곤졸라 포테이토	23,500		
트리플오일풍기	25,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서양식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포시즌키친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1.5km (다만, 특수상권인 경우에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별도의 영업지역을 설정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만약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포시즌키친’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포시즌키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대리점			
일반소매점			
기타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40	6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포시즌키친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에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1항제1호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1항제2호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1항제3호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1항제4호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1항제5호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에 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0조제1항제6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원·부재료 등에 관한 대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제41조제1항 (제31조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2회 이상 정기 납입경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기 납입경비의 산정을 위한 총매출액 또는 매출액 증가 비율을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6개월에 걸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5항에 의한 노후 점포 설비의 교체·보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지적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41조제2항제1호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제41조제2항제2호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제2항제3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41조제2항제4호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 후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른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본 호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	제41조제2항제5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41조제2항제6호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41조제2항제7호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41조제2항제8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제2항제9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계약 갱신 시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로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만약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 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계약서 제38조 참조)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 양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031-374-4378)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했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상속사실 통지 → 당사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 가맹본부는 상속인과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포시즌키친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렇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서양식을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031-374-4378)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포시즌키친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평일 10:00 ~ 21:30 주말 11:00 ~ 21:00	주 6일 이상	문의(031-374-437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7명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관리감독자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본부	주방 위생, 매장 청소 현황 등
친절도 (서비스)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가맹본부	고객 접대, 종업원 교육 등
품질 관리 (서비스의 표준화)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가맹본부	레시피 준수, 자점매입 여부 확인 등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에 귀하의 서명을 받아, 포시즌키친과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포시즌키친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국 단위	전액 부담	없음	광고 계획 공고 또는 서면 통지 → 가맹점의 동의서 작성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광고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가맹점 단위	없음	전액 부담		매장 광고
판촉행사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동의서 작성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시 전체 적용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증정상품 출하가 50%		
	팸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기타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유동적			

전국 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 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맹계약서 제46조 손해배상

- ①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 계약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제29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직접 원·부재료 등을 조달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별로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제42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별로 1일 경과할 때마다 300,000원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⑦ 가맹점사업자가 제43조(가맹점사업자의 비밀유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별로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가맹점사업자가 무단 폐점, 무단 영업표지 변경, 무단으로 영업양도 등을 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위약별로 2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81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홈페이지 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81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80 ~ 79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68 ~ 6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64	
가맹금 예치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D-63 (1일)	16p 참조
점포 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62 ~ 60 (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 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59 (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64 ~ 5 (60일)	16p 참조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1 ~ 8 (14일)	
집기 등 공급	- 집기, 장식품, 원부재료, 상품 등 공급	D-7 ~ 1 (7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 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 포 환 경 개 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간판 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 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점포환경개선일 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에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행사비					
판촉장려금					
판촉지원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반품지원					
마일리지					
CRM					
테스터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
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 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 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 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 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031-374 -4378)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 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 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 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 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 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 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031-374 -4378)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포시즌키친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 내용

당사는 포시즌키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레시피 전수, 메뉴에 대한 기본교육, 운영 매장에서 실습 등	실습교육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규 레시피 전수,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실습교육	서면 통지 후 1개월 이내	새로운 메뉴 출시된 경우 등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	매장 청결, 친절도, 품질관리, 재고 관리, 위생관리, 회계 처리, 각종 설비 관리, 기타 계약사항 준수 여부 등	집단 강의	서면 통지 후 1개월 이내	영업장 관리·감독 중에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등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포시즌키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 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2주 이내	8,8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주 이내	1,100	새로운 메뉴 출시된 경우 등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	1주 이내	1,100	영업장 관리·감독 중에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등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1조 제6항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교육, 특별교육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1조 제7항에 따라 1개월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경기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8, 1층, 2층
2	경기	광교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77, B2층 249~253, 255, 256호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0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450,053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31-374-4378)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